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3
------	----

2018.9.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18.9.6.)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가치 실현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 집중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나.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18.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2019년에도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 (시장요청 사항, 2014. 7. 8.)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 기업별 맞춤형지원 및 공동지원(경영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 필요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18.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우수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민·관 공동영업단 및 투자유치 교육·설명회 개최 등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언론홍보 등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표자 정기간담회 운영 등 네트워크 활동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 지원
- 그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19. 1. 1. ~ 2021.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67,600천원
- 산출근거
 - 우수기업 : 894,600천원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통지원 : 248,480천원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 452,240천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 147,020천원
 - ▷ 민간위탁 수수료 : 16,860천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운영 : 373,000천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 60,300천원
 - ▷ 쇼핑몰 운영 용역 등 사업비 : 305,400천원
 - ▷ 민간위탁 수수료 : 7,300천원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의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과 공동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에서 위탁운영 중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잔액
2016	우수기업 육성	900,000	847,162	94.1	52,838
	쇼핑몰 운영	180,000	168,893	93.8	11,107
2017	우수기업 육성	745,000	683,548	91.8	61,452
	쇼핑몰 운영	285,000	257,235	90.3	27,765
2018	우수기업 육성	750,222	750,191	97.1	31
	쇼핑몰 운영	323,250	313,900	97.1	9,350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 서울시는 매년 3단계 심사를 거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 3년차까지 기업별 ‘맞춤형 집중지원’을, 집중지원 종료기업을 포함한 전체 우수기업에 ‘공통지원’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총 48개 기업을 지원해 왔음¹⁾.
 - 공통지원은 △경영지원(우수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외부기관 연계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판촉활동 및 공공구매 상담 지원), △홍보지원(기업별 홍보물 제작 등), △투자유치 지원(재무 및 투자교육 진행), △네트워크 구축지원(시·SBA·우수기업관계자 참여 워크숍) 등이 있음.
 - 맞춤형 지원은 경영, 판로, 품질, 홍보 등 4개 분야, 16개 부문 중 기업별로 희망하는 부문에 1,5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며, 서울시는 2017년 27개사에 총 101건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음.[참고자료1]
- 전년대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평균 고용성장률은 21%, 매출 성장률은 16%로, 2017년 지원 목표(고용성장률 7%, 매출성장률 10%)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1) 서울시는 매년 신규 우수기업 선정 시 기존의 선정기업들을 재인증함. 현재 2개의 기업이 재인증에서 제외되어 2018년 총 46개의 기업을 지원 중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성과〉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4.12월말 기준 (‘13~’14 성장률)		2015.12월말 기준 (‘14~’15 성장률)		2016.12월말 기준 (‘15~’16 성장률)		2017.12월말 기준 (‘16~’17 성장률)	
	4년차기업 (2013년 12개사)	34,995	35.2%	55,028	57.2%	59,305	7.8%	67,808
	532명	40.4%	574명	7.9%	612명	6.6%	858명	40.2%
3년차기업 (2014년 6개사)	5,052		5,963	18%	5,425	△9.0%	6,697	23.4%
	80명		80명	0%	83명	3.8%	84명	1.2%
2년차기업 (2015년 6개사)	-		5,464		6,898	26.2%	6,476	△ 6.1%
	-		151명		152명	0.7%	130명	△14.5%
1년차기업 (2016년 15개사)	-		-		44,155		54,359	23.1%
	-		-		431명		483명	12.1%

-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2년차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차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쇼핑몰인 ‘함께누리몰’²⁾은 2014년 오픈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이며,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 www.hknuri.co.kr

〈최근 3년간 함께누리몰 매출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매 출 액	500	614	1,000	1,393	2,000	2,390	3,000	1,026
입점기업	500	250	500	354	500	423	500	454
판매품목	3,000	2,330	3,000	4,785	6,000	5,646	6,000	6,025

- 함께누리몰의 운영은 IT 컨설팅, 시스템 통합 분야 전문 사회적 기업인 “행복ICT”에서 운영 중이며, 용역비로 2억 3,868만원을 지출하였음.

〈함께누리몰 운영 세부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총 계		313,900
인건비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29,467
운영비	보험료, 출장여비, 회의비 등	5,339
사업비	소 계	279,094
	쇼핑몰 운영 (운영 용역비, 서버호스팅비, 기능강화 등)	238,685
	기업판로 및 마케팅 지원 (상세페이지제작, 카탈로그, 홍보관촉물, 이용설명서제작 등)	32,889
	입점기업 역량강화 등 (입점기업 교육강사료, 민간위탁사업 위탁수수료 등)	7,520

- 함께누리몰의 구매유형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의한 구매(99%)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민간구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17년 함께누리몰 구매유형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치구	기타 공공기관	개인	기업·시설·단체	합계
매출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매출액	2,101.6	262.9	16	9.5	2,390
매출비중	88%	11%	0.6%	0.4%	100%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이 사업을 위탁 운영중인 SBA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영지원과 국내외 판로지원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정 기업의 고용·매출이 성장하고 함께누리몰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경영·판로·홍보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수탁업체인 SBA와의 재계약 방식이 아닌 민간공모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인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역량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지원’ 사업과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을 분할 관리³⁾하고 예산 또한 별도로 교부·정산하고 있어 위탁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 밖에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 및 판로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업무간에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해당사업이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지원팀
온라인쇼핑몰 운영 :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

[참고자료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분야	지원부문	주요 지원 내용
경영지원	전문 컨설팅	재무/세무/회계, 인사, 특허, 마케팅, 기업가치평가, IR 자료 제작 등
	직원 교육	외부기관 교육비용, 자체 진행 교육 등
	직원 워크숍	장소/차량 임차료, 외부강사비, 숙박비, 식비 등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 국제회의 참석 등	항공료, 참가비, 숙박비 등
	인재채용	온라인 취업사이트 내 채용공고 비용 등
판로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참가비 등
	매장 입점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백화점 제외)
	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신용조사 등
	장터 참가	참가비 및 관련 비용 등
	상세페이지 제작	페이지 제작비용 등
	사진 촬영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사진 촬영 비용 등
품질지원	규격인증 획득	규격인증 획득 관련 비용(컨설팅 포함)
	디자인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등(컨설팅 포함)
	시제품 개발	신제품용 목업(모델링), 3D프린팅, 테스트비용 등
홍보지원	기업 및 상품 개별 홍보	인쇄/옥외/방송/온라인 광고/소액 판촉물 등
	홈페이지 개선	신규 제작, 리뉴얼 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가치 실현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 집중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나.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18.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2019년에도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 (시장요청 사항, 2014. 7. 8.)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 기업별 맞춤형지원 및 공동지원(경영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 필요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18.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민·관 공동영업단 및 투자유치 교육·설명회 개최 등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언론홍보 등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표자 정기 간담회 운영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 지원
- 그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19. 1. 1. ~ 2021.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67,600천원
- 산출근거
 - 우수기업 : 894,600천원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통지원 : 248,480천원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 452,240천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 147,020천원
 - ▷ 민간위탁 수수료 : 16,860천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운영 : 373,000천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 60,300천원
 - ▷ 쇼핑몰 운영 용역 등 사업비 : 305,400천원
 - ▷ 민간위탁 수수료 : 7,3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기준)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호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작성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오세진 (☎2133-5497)